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(2017. 12. 18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7년 12월 21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81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5호 중 ‘봉급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제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’ 를 ‘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’ 로 한다.

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‘통상임금’ 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소정근무 또는 총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.

제5조(보수의 계산) 중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사람이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8조(결근기간의 봉급감액)을 제9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무단결근한 직원에게는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.

제9조(봉급)을 제8조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이 회의 회장은 제1항을 정함에 있어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10조(기말수당) 제11조(정근수당), 제12조(직무수당), 제13조(장기근속수당), 제17조(체력 단련비), 제18조(처우개선비)를 삭제한다.

제16조(가족수당) 제2항 ‘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며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’를 ‘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를 이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’로 한다.

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매해년도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따른다.

⑤이 회 회장은 소속 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, 해당 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19조(직책수당)의 조제목을(직책보조비)로 하고 ‘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1급부터 4급 까지 직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’를 ‘이 회 팀장급 이상 직원의 직책에 따른 직책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각 직책의 공석으로 인한 해당직책 대리 자에게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’로 한다.

제20조(기타수당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기타수당)이 회 회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봉급감액지급자에 대한 수당지급)를 삭제한다.

제23조(퇴직금지금액)의 ‘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’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.
- ②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법에 의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(부양가족신고서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(2017. 12. 18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7년 12월 21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82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위원의 권한과 직무) 제4항 중 ‘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’ 를 ‘선거 종료 후 1개월까지로’ 한다

제7조(입후보자의 등록) 제3항 중 ‘5인 이상이’ 를 ‘5인 이상 10인 이하가’ 로 하고, 제12항에 ‘단, 선거관리위원인 자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’ 고 단서조항을 추가한다.

제7조의5(후보자의 소견발표) 제3항 중 ‘토론회’ 를 ‘소견발표’ 로 한다.

제9조(당선인 결정) 제3항 중 ‘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추대자를 결정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 당선인 결정을 선언’ 을 ‘이사회에서 회장 추대자를 결정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’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